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11.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

기획재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외 5명(장호섭, 도하석, 남현주, 김해철, 박정환)
- 발의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 2. 제안이유

- 외국인유학생을 조례에 명시하고, 재외국민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인재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로 변경
- 조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유학생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등 지원사업 확대(안 제7조1항3호)
- 조례 전반에 사용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으로 일괄 변경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 「고등교육법」 제34조의7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1. 14. ~ 11. 26.)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취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의 2025년 9월 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3,204명(총 인구 532,213명의 2.5%)으로, 대구시 전체(38,650명)의 34.2%를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학생은 5,20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9.4%임. 또한, 우리 지역 대학의 2025년 4월 1일 기준 외국인유학생 3,747명으로, 대구시 전체(4,921명)의 76.1%이며, 이 중 학위과정은 2,020명, 연수과정은 1,727명이 재학 중에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로 변경함.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외국인주민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안 제2조제2호는 외국인유학생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유학생 또는 연수생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정의에서 제외함.

- 안 제7조는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 개정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취·창업 등 맞춤형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외국인유학생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학교, 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참고 1**      **우리 구 외국인 등록 현황** (2025. 9. 30. 기준)

○ 대구시 구·군별 현황 (단위: 명)

계	달서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38,650 (100%)	13,204 (34.2%)	967 (2.5%)	2,080 (5.4%)	2,786 (7.2%)	2,180 (5.6%)	7,144 (18.5%)	1,783 (4.6%)	7,885 (20.4%)	621 (1.6%)

○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계	베트남	중 국	인 도 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몽 골	우즈베 키스탄	파 키 스 탄	캄 보 디아	기 타
13,204 (100%)	5,483 (41.5%)	1,307 (9.9%)	800 (6.1%)	616 (4.7%)	580 (4.4%)	561 (4.2%)	465 (3.5%)	419 (3.2%)	372 (2.8%)	2,601 (19.7%)

○ 체류자격별 현황 (단위: 명)

계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기 타
13,204 (100%)	5,200 (39.4%)	3,646 (27.6%)	1,518 (11.5%)	2,840 (21.5%)

※ 기타: 결혼이민가족, 난민신청, 동반, 동포국적요건 등

**참고 2**      **우리 구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현황** [2025. 4. 1. 기준]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KESS)]

○ 대학별 현황

(단위 : 명)

학 교 명	총계 (A+B)	학위과정				연수과정		
		계 (A)	대학/ 전문대학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B)	어학 연수생	교환 연수생
대구시	4,921	3,195	1,932	428	154	2,069	1,752	205
달서구	3,747	2,020	1,533	369	118	1,727	1,522	205
계명대학교(41개국)	3,486	1,838	1,351	369	118	1,648	1,446	202
계명문화대학교(14개국)	255	176	176	0	0	79	76	3
대구공업대학교(2개국)	6	6	6	0	0	0	0	0

○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별	계	학위과정	연수과정	비고
계	3,747	2,020	1,727	
베트남	2,069	975	1,094	
중국	516	455	61	
몽골	408	132	276	
미얀마	185	130	55	
우즈베키스탄	141	135	6	
프랑스	73	1	72	
일본	43	10	33	
기타	312	182	130	

# 【관 계 법 령】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8. ~ 16. (생략)

# 【현행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추진의 범위
3. 구 소재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 질병 등의 긴급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인의 날)** 구청장은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주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명예주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주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주민증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우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호에 따라 명예주민증을 수여한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